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21942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나2194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5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석

피고, 피항소인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지화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3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35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65,800원을 지급하고, 2020. 3. 6.부터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별지 기재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4,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S”을 “T”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각 토지는 1978. 11.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등기부 내지 지적공부상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별지 기재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충주시 U, V, W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국가로 변경되었으나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부상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망 F에서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국도 H의 사용개시 공고를 전후하여 별지 기재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충주시 U, V, W 도로에 대하여 매매 또는 협의취득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펴 본 별지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경위, 망 F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약 38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 및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혜령, 판사 김민지

별지